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- 환경부 공고 제2009- 277호, 2009. 8. 31-

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(폐기물부담금 대상) 중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(EPR)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,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(안 제18조제1호내지제3호, 별표4)

- (1) 필름류 포장재 중 생활계에서 EPR대상과 혼합 배출되는 양이 많은 일회용 봉투, 의복류·위생용 종이제품·가정용 고무장갑·전기/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폐기물부담금대상에서 재활용의무 대상(EPR)으로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함.

나.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
(안 제18조제2호)

- (1) 현행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,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(2009. 1. 1시행)으로 인해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-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- 808호, 2009. 9. 2 -

국토해양부는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